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778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B은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합계는 162,944,780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 E은 2021. 12. 2. 망인이 소유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이 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거나 ‘B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B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녀인 B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2. 2.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